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5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6월 1일

3. 제안이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충청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충청북도산불방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산림보호법」 제29조는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30조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그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은 가능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충청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충청북도산불방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5. 22.~'20. 5.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봄철 산불대책본부 종료 후 가을철 산불방지 사전차단을 위한 산불근절 세부추진계획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 요청하였으나, 봄철 산불대책본부 종료 후 가을철 산불방지 차단을 위한 산불근절 세부추진계획은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조례안 제4조제2항제5호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사항임.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청권 4개 시·도 중 산림 면적이 가장 적은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단양 산불 발생과 같이 크고 작은 산불 발생으로 수많은 산림이 소실되고 있으므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